

보도시점 2026. 7. 28.(화) 12:00 (2026. 7. 29.(수) 조간)

## 폭염은 재난, 5대 기본 수칙 준수가 생명을 살리는 가장 빠른 작업입니다.

- 2주간(8.3.~8.14.), 폭염·질식 사고 취약사업장 1천개소 집중점검
- 노동부 장관, 전국 지방관서장에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폭염단계별 옥외 작업 중지 조치 사항’ 중점 확인 지시

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3일부터 8월14일까지 2주간,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 종료 후 무더위가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8월을 맞아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① 시원한 물, ② 냉방장치, ③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 보냉장구 지급, ⑤ 119 신고

특히, 김영훈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 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는 옥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적극 조정”,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 외에는 모든 옥외 작업 중단” 등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 사항을 중점 확인하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 [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 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 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 작업 중지

또한, 폭염은 밀폐공간의 산소 농도를 낮추고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더 발생시켜 질식사 위험을 높이는 만큼, 맨홀·오폐수처리시설·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에 대해서는 「질식사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 ①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② 충분한 환기, ③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김영훈 장관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상황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폭염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준수가 가장 빠르고 안전한 공기 단축 수단임”을 강조했다.

또한 “밀폐공간 작업 시 ①유해가스 측정, ②충분한 사전 환기, ③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 이후에도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지역과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및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다.

- 붙임 1.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수칙」  
2.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       |                             |     |            |                                          |
|-------|-----------------------------|-----|------------|------------------------------------------|
| 담당 부서 | 산업안전보건본부<br>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단 | 담당자 | 사무관<br>주무관 | 이근배 (044-202-8882)<br>홍현종 (044-202-8945) |
|       | 산업보건보상정책관<br>산업보건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윤현욱 (044-202-8870)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남균 (044-202-8871)                       |
|       | 산업보건보상정책관<br>직업건강증진팀        | 책임자 | 과 장        | 신백우 (044-202-8890)                       |
|       |                             | 담당자 | 사무관        | 박현건 (044-202-8891)                       |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18개 모국어 번역본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 이상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 온열질환 예방조치

- ✓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 작업장소 근처에 휴게시설(쉼터 및 그늘진 장소) 설치



체감온도 계산기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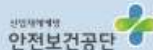
|                   |                                                                                                                                        |
|-------------------|----------------------------------------------------------------------------------------------------------------------------------------|
| <b>물</b><b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li> </ul>                                                                  |
| <b>냉방장치</b><b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염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li> <li>✓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li> </ul> |
| <b>휴식</b><b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li> <li>✓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li> </ul>         |
| <b>보냉장구</b><b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li> </ul>                                                            |
| <b>119 신고</b><b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li> <li>✓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li> </ul>       |

##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                              |                                                                                        |
|------------------------------|----------------------------------------------------------------------------------------|
| <b>체감온도 33℃ 이상</b><br>폭염주의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li> </ul>                |
| <b>체감온도 35℃ 이상</b><br>폭염경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li> </ul>   |
| <b>체감온도 38℃ 이상</b><br>폭염중대경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li> </ul>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질병관리청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 ▶ 온열질환 민감군

- ✓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 ✓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 ✓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자



###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 ✓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작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단계적 증가
- ✓ 주기적으로 노동자 건강상태 확인
-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 ✓ 폭염작업 시간 단축, 휴식 시간 추가 배정

##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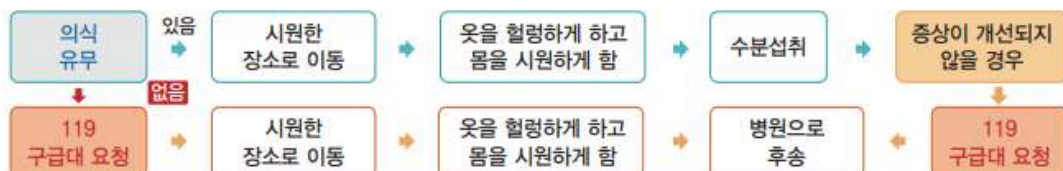
\*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

### ▶ 온열질환 증상

- ✓ 평소보다 높은 체온, 땀을 많이 흘림,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 ▶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

- ✓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세요.
- ✓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 ※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 ✓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 ▶ 밀폐공간은 '질식사 사망 위험공간'입니다. 폭염 시 매우 위험합니다.

- ✓ 밀폐공간(탱크·저장용기의 내부, 맨홀 등)은 기온 상승 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위험이 크게 증가하여 '한 번의 호흡으로도 사망할 수 있는 위험 장소'입니다.

반드시 「질식사 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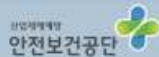
- ①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② 작업전·작업중 지속적인 환기
- ③ 적정공기가 아닌 경우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 질식사 사고 예방 핵심 안전보건규칙 개정('25.12.1) 주요내용

- ①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의무 명시 ② 측정결과 기록·보존 ③ 사고 발생 시 119 우선 신고 ④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교육 강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질병관리청

#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1



## 산소·유해가스 측정!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알 수 없다면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2



## 충분한 환기!

작업 전, 작업 중에는 계속 환기하십시오.

3



## 호흡보호구 착용!

적정 공기가 아닌 경우 반드시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세요.

### 밀폐공간 질식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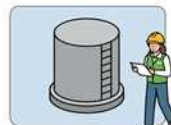
정화조



분뇨처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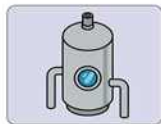
맨홀



원료 저장탱크



침전조



반응기



식품발효·저장소



바지선 부력탱크



용접 배관내부